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 000(주)의 노동조합 지부장 배 체육행사와 관련한 경기도중 재해를 입은 바, 업무상 재해 여부는 어떤지요?

A 노동조합 지부장배 체육행사(축구) 예선경기를 사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다 발생한 재해라면 행사가 노

동조합이 주관한 것이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휴게시간 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관례적으로 실시된 점, 회사에서 음료 등 찬조금을 지원한 점, 결승경기의 경우 근무 시간까지 할애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재해는 업무

Q 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요양 후 최초로 장애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도 재활스포츠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 재활스포츠 지원대상은 산재로 인한 장애부위의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자신감 회복 등 치료종결 후 적극적인 재활동기를 부여하고자 최초 요양 종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로 제한한 것이므로 이미 종결된 후 사회 복귀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재요양으로 장애급여를 새로이 지급 받았다 할지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국재활스포츠협회(031-877-7582-3)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두통

두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생한 증상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된 난제이다. 두통을 일으키는 주요병증은 첫째로 뇌저체에 병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와 그 밖의 급성 전염병이라든가 중독 그리고 내과학적인 병 또는 안이비인후과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두통이 있고 둘째로 뇌하수체 등 때문에 일어나는 신경성 두통은 주로 머리의 좌우 한쪽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젊은 층에 많으며 통증은 재발을 잘한다. 셋째로는 빈혈성 두통 즉 머리가 흔들리면서 눈이 감짝해지는 두통증인데 옆으로

누워 조용히 있으면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넷째는 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갱년기의 두통인데 이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것으로 성호르몬의 조절이 순조롭지 못해서 오는 것이다. 두통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면서 인내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두통이다.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격렬한 두통이 발작하거나 구토, 두통, 경항부(목부분)강직 등이 동반되거나 만성적 두통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두통의 한방적 원인에는 소아나 노

인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정기의 부족으로 두뇌가 공허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고 부인에서는 사려(생각)의 과다로 인하여 체내에 울화나 담이 두부로 상충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다. 그 외에 감기나 열성질환에 풍이 겹치면 가벼운 두통에서 참기 어려운 극심한 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머리가 아픈데 차나 가벼운 두통의 경우에는 차를 마시면서 해소 될 수 있기도 하다. 흔히 골치가 아프다고 할때 두통의 부위는 양쪽 태양혈(눈의 뒤쪽 2~3센티미터 되는 움푹한 곳)에 오는데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주거나 종지혈(귀뒤의 3~4센티미터 되는 곳 하단부위)을 손으로 여러 번 누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에 좋은 효과가 있다. 그밖에 만성적 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침치료를 피해야 한다.

☞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jhrbong.com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임상병리과 과장 김동렬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나요? ①

관절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두렵게만 여겨지는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에 대해 알아보자. 수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멕시코 인디언의 유골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이미 그 당시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오래 된 질환이지만, 의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에 불과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점점 진행이 되어 연골과 관절에 손상을 초래하며, 심하면 관절에 강직과 변형을 초래하여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

이기도 하다. 단순히 관절에만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신(심장, 폐 등)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며 서서히 관절에 파괴를 야기하는 진행성 질환이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손목, 손가락의 인접 마디, 무릎 양쪽에 대칭적으로 병이 발생되며, 아침에 일어나면 침범된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급성 염증이 존재할 경우 관절이 부어 오르고 열이 나며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많은 관절염이 그렇지만 주로 여자(70~80%)에서 많

이 나타나며, 대개 30~50 대 연령층에서 많이 관찰된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인(病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 적혈구 침강속도 등)와 방사선 검사(일반 골 촬영, 관절 초음파 등)를 실시하며 추가로 특수검사(항핵항체, 항핵주변항체 등)가 필요하기도 한다.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 중 적지 않은 예가 "제가 류마티스 인자 검사 상 양성인 나왔는데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류마티스 인자는 전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80% 정도에서 양성을 보이지만 일부 정상인에서도 양성을 보일 수 있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며,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소견과 함께 진찰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포천의료원 (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甲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甲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관례를 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표시하였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3.26. 93다 55487).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甲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귀하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82)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중3년 남학생입니다. 포르노비디오나 아동을 보면 저절로 성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보고 싶어지고 지위도 하게 됩니다. 나쁜 건가요?

A 성행위의 노골적 묘사 즉, 음란물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충동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 성에 대해서 알고 싶

은 건 많은데 어디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은 없고 비디오나 컴퓨터 사이트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위행위도 하게 됩니다.

음란물이 나쁘다는 건 성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변태적인 생각에 흥미진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위에 옮기려 하거나 심한 죄책감에 빠져든다는 것입

니다. 음란물에서의 성행위는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만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또한 주로 강간, 그룹섹스 근친상관 등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현실적으로 착각하기 쉽고 사물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음란물을 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 할 때면 욕구의 관리를 운동이나 취미 생활, 서클활동, 장소 옮기기 등을 말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해서 자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저희 회사는 화공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로서 금년에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며 어떤절차를 거쳐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A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감사대상 법인(이하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2.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3.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공개정정법인)입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4월 이내에 외부회계감사인(회계법

인이나 공인회계사감사반)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외부회계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법정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로, 12월법인이 2004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05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2005년 4월 말일까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4월 30일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주일 후인 5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송관수 (02-404-9944)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프로광택사 '청소박사'

광택, 코팅, 실내크리닝
흡집제거, 수입차 환영

카펫, 침대, 쇼파
출장크리닝 전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16

무료전화 : 080-557-4445

TEL : 031)531-4448 HP : 017-208-4445 대표 한기창

